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875
----------	-------

발의연월일 : 2022. 10. 21.

발의자 : 이소영 · 기동민 · 김태년

송기현 · 신현영 · 오기형

유정주 · 이용선 · 장철민

조오섭 · 조응천 · 홍기원

홍정민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함.

또한,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간의 중개·대리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제4항, 제68조제4호 및 제70조제2항
제1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와 중개·대리거래계약 당사자의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④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차주와 중개·대리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중개·대리거래계약서를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중개·대리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2. 중개·대리거래계약 기간, 계약 갱신 절차, 계약 내용 변경 시 절차,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3. 중개·대리서비스 등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
4. 운임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방식, 시기
5.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6. 그 밖에 중개·대리거래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6조제4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제70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② (생략) <u><신 설></u></p>	<p>제26조(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 ② (현행과 같음) <u>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주선사업자와 중개·대리거래계약 당사자의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준 위·수탁계약서를 고시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표준 위·수탁계약서에 준하여 계약하여야 한다.</u> <u>④ 운송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계약을 중개·대리하는 경우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차주와 중개·대리거래계약을 체결한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중개·대리거래계약서를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u></p>
<p><u><신 설></u></p>	

1.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중개·대리 서비스 등의 구체적인 내용 및 이에 대한 대가로 수취하는 수수료의 부과 기준 및 절차

2. 중개·대리거래 계약 기간, 계약 갱신 절차, 계약 내용 변경 시 절차, 계약 해지 사유 및 절차

3. 중개·대리서비스 등의 개시, 제한, 정지의 기준 및 절차

4. 운임의 정산 방식 및 정산대금 지급 절차, 방식, 시기

5. 화물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분담 기준

6. 그 밖에 중개·대리거래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생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 ⑥ (생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 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주선사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p>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p> <p>제68조(별 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1. ~ 3. (생 략)</p> <p><u><신 설></u></p> <p>제70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p>1. ~ 11. (생 략)</p> <p><u>12.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u></p> <p>12의2. ~ 27. (생 략)</p> <p>③ (생 략)</p>	<p>----- -----.</p> <p>제68조(별 칙)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4. 제26조제4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u></p> <p>제7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p> <p>1. ~ 11. (현행과 같음)</p> <p><u>12. 제2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준수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운송주선사업자</u></p> <p>12의2. ~ 27.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	--